

2020 한 눈에 알아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운영

## e-book 이용방법 안내

### 1. 페이지 이동하기

**수동** 화면 양 끝에 있는 '◀ 또는 ▶' 모양의 아이콘 클릭 시 이전 또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동** 우측 상단의 '슬라이드' 아이콘 클릭 시 페이지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 수동 페이지 이동 ]



[ 자동 페이지 이동 ]

### 2. 교육내용 검색하기

우측 하단의 밑줄(검색) 위치에 학습하고자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주제어(또는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엔터키 또는 우측의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어(또는 키워드)가 포함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3. 교육자료 PDF로 저장하기

우측 하단의 '다운로드' 아이콘 클릭 시 e-book의 내용을 PDF 형태의 교육자료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대신 바로 출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프린터' 아이콘 클릭 시 부분 또는 전체 출력이 가능합니다)



[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기능) ]



[ 출력하기 ]





## 2020 한 눈에 알아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운영

CONTENTS	■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참여 절차	02
	■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준비 및 운영의 이해	03
	1. 직업훈련기관 승인 및 전산 등록방법	03
	2. 훈련기관 인증평가	04
	3-1. 집체훈련과정 심사(통합심사)	08
	3-2. 원격훈련과정 심사	10
	4-1. 훈련과정 운영의 이해(실업자훈련 및 근로자훈련)	12
	4-2. 훈련과정 운영의 이해(사업주훈련)	14
	5. 훈련이수자 평가	16
	6. 부정훈련관리	19
	■ 심사평가사업 관련 기본용어 모음	22

※ 본 자료의 내용은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므로, 차년도 운영 시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참여 절차

## 1. 훈련기관 등록

- ▶ HRD-Net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전자서비스신청서 작성
- ▶ 전자서비스신청서 등 관련 서류 관할고용센터 제출
- ▶ 훈련기관 승인 및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활용

- 한국고용정보원(시스템관련)  
1577-7114
- 관할고용센터(국번없이)1350  
(www.work.go.kr/jobcenter)

## 2. 훈련기관 인증평가

- ▶ 평가대상: 신규기관 및 실적보유기관
- ▶ 평가절차: 총 2단계 진행(1단계 기관전성평가, 2단계 역량평가)
- ▶ 결과활용: 인증평가 등급은 훈련과정 신청 및 인정 시 반영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1644-5113(내선 1)

## 3-1. 집체훈련 과정심사

- ▶ 집체훈련 상·하반기 운영 통합심사
- ▶ 특화훈련(일반고, 과정평가형, 중앙부처 국기, 청년취업 아카데미) 과정심사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1644-5113(내선 2)

## 3-2. 원격훈련 과정심사

- ▶ 재직자 원격훈련과정(인터넷원격, 우편원격, 스마트훈련, 혼합훈련(B/L)) 심사
- ▶ 실업자 원격훈련과정(계좌적합인터넷원격, 혼합훈련(B/L)) 심사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  
1644-5113(내선 3)

## 4. 훈련과정 운영

- ▶ 훈련과정 실시신고
- ▶ 훈련과정 운영 중 변경사항 신고
- ▶ 훈련과정 수료 보고
- ▶ 훈련비 신청

- 관할고용센터(실업자·근로자훈련)  
(국번없이)1350  
(www.work.go.kr/jobcenter)
-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훈련)  
1644-8100

## 5. 훈련이수자평가

- ▶ 평가대상: 훈련종료일이 2020.1.1. 일부터 2020.12.31.인 40시간이상 NCS 및 비NCS 과정
- ▶ 평가유형: ①현장평가(샘플평가 포함) ②서면평가 중 택1하여 신청가능

\*유형별 세부 내용 설명회 자료집 참고

- ▶ 결과활용: 훈련기관 인증평가 성과평가 점수 및 훈련과정 선정에 반영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성과평가센터  
1644-5113(내선 4)

## 부정훈련 관리

-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도·감독 대상기관 선정
- ▶ 합동 지도·감독 실시
- ▶ 심사·평가 반영 및 제도 개선
- ▶ 부정훈련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부정훈련관리센터  
1644-5113(내선 5)

# 1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준비 및 운영의 이해

## 직업훈련기관 승인 및 전산 등록 방법

### 신규기관 승인 및 등록절차



1. 'HRD-Net(www.hrd.go.kr)'에 훈련기관으로 회원가입

2. 일체의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로 송부

\* 관련서류: 전자서비스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시설지정서, 시설도면, 훈련인력현황 관련 증명서류 등

3. 관할 고용센터 훈련기관 승인여부 및 훈련기관관리번호(9자리) 확인

4. HRD-Net 접속 후 심사평가시스템\* 다운로드 및 메뉴 활용

\* 다운로드 경로: HRD-Net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 MY서비스 → 행정지원 이용 신청 →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 관련 문의

문의사항	문의처	
HRD-Net 전산 오류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직업훈련기관 승인 (훈련기관관리번호 발급 등)	관할고용센터	www.work.go.kr/jobcenter
		☎ (국번없이) 1350

##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원훈련의 위탁자격을 인증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체계 구축”

### 관련법령 및 고시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5호)

### 평가대상

- 아래 표에 제시된 평가대상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구분	평가대상 훈련
집체 훈련	<b>실업자훈련</b> -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제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등 포함
	<b>재직자훈련</b>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제훈련)
원격 훈련	<b>실업자훈련</b> -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b>재직자훈련</b>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혼합훈련과정(집체+원격) 포함

※ 정부가 출연·재출연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서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하려는 훈련기관

### 평가유형분류 (2020년 기준)

-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
  - 2019. 1. 1. ~ 2019. 12. 31.에 인증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사업의 종료 실적이 있으며 2020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
  - 2021년 이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중 2020년 인증평가에 참여하여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받고자 하는 기관
- 신규기관 인증평가
  - 2019. 1. 1. ~ 2019. 12. 31.에 인증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사업의 종료 실적이 없는 기관
- 인증등급 보유기관 모니터링
  - 2021년 이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

## 평가신청절차 및 방법



## 평가기준 및 방법 (실적보유기관 기준)

### · 집체훈련 실적보유기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0점 이상 감점시 인증유예	서면평가
			2. 재정건전성		
역량 평가 (100점)	성과 평가 (60점)	실업자 훈련	1. 일반취업률	15점	서면평가
			2. 고용유지기간	10점	
			3. 수요자 만족도	10점	
			4. 중도탈락률	5점	
			5. 가점 (취업자 임금수준, 국기 혼합 훈련 참여 실적)	최대 5점	
	재직자 훈련	1. 수료율	20점	서면평가	
		2. 수요자 만족도	20점		
		공통	1.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15점
			2. 개설률		5점
			현장평가(40점)		1. 기관경영
2. 훈련과정 관리	8점				
3. 시설 및 장비	10점				
4. 훈련전담인력	10점				
5. 훈련생 관리	6점				

\* 성과평가 점수는 가점을 포함하여 6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격훈련 실적보유기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0점 이상 감점시 인증유예	서면평가	
		2. 재정건전성			
역량 평가 (100점)	성과 평가 (60점)	실업자 훈련	1. 일반취업률	15점	서면평가
			2. 고용유지기간	10점	
		3. 수요자 만족도	10점		
		4. 중도탈락률	5점		
		5. 과정운영실적	5점		
		6. 개설률	10점		
			7. 가점 (취업자 임금수준, 혼합훈련 과정 개발·운영 실적)	최대 5점	
	재직자 훈련	1. 수료율	20점	최대 5점	
		2. 수요자 만족도	20점		
		3. 훈련과정 등급	5점		
		4. 개설률	10점		
		5. 가점 (스마트훈련, 혼합훈련, NCS 적용 과정 개발·운영 실적)	최대 5점		
공통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	5점		
현장평가(40점)		1. 기관경영	6점	현장평가	
		2. 훈련과정 관리	8점		
		3. 훈련인프라	10점		
		4. 훈련전담인력	10점		
		5. 훈련생 관리	6점		

\* 성과평가 점수는 가점을 포함하여 6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결과  
부여방식  
(실적보유기관 기준)

기관건전성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감점 20점 미만 (적합)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의 75% 이상 득점	3년인증 (인증 우수훈련 기관 자격 요건*)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3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감점 20점 이상 (부적합)		인증유예

\* 성과평가·현장평가 75% 달성 외에도 기관건전성 등 우수훈련기관 요건 충족 필수(우수훈련기관 선정방식 및 요건은 향후 공지될 공고문 참조)

\*\* 신규기관 인증평가에서는 '3년인증' 및 '5년인증'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2단계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인증유예

## 평가일정 (2020년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실적 (연1회)	신규 (연1회)
0. 평가 계획 사전안내	· 2020년도 인증평가 계획 사전 안내	'19.11.11.	
1. 평가 계획 공고	· 2020년도 평가기준 및 일정 공고	'19.12.13.	
2. 훈련기관 설명회	· 권역별 훈련기관 설명회 실시	'19.12.16.~12.20.	
3. 평가 신청 및 서류 접수	·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등 평가 서류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제출	'20.1.28.~2.11.	
4. 평가 신청서 수정·보완	· 신청 기간 내 접수한 기관에 한하여 평가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수정·보완(HRD-Net 심사평가시스템)	'20.2.12.~2.14.	
5.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통보	·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온라인 통보	'20.3.20.	
	·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최종 통보	'20.4.14.	
6. 현장평가 일정 안내 및 역량평가 실시	· 기관건전성평가 적합 기관에 대해 2단계 역량평가(현장평가) 일정 온라인 통보	7월중순 ~ 10월말	5월중순 ~ 7월중순
	· 훈련기관별 역량평가 실시		
7. 평가 결과 통보	· 평가결과 온라인 통보	11월초	7월말
8.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인증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온라인 제출	11월초 ~ 11월말	7월말 ~ 8월초
	· 이의신청 심의 및 결과통보		
9. 평가 결과 확정	· HRD-Net 인증평가 결과 게시	12월초	8월중순

※ 상기 일정은 2020년도 평가 운영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문의

문의내용	문의처		
인증평가 관련	훈련기관 인증평가센터	www.ksqa.or.kr	소통마당 > 훈련기관인증평가 > Q&A
		연락처	☎ 1644-5113 연결 후 1번
		이메일	ctoa1@koreatech.ac.kr
HRD-Net 전산오류 관련	한국고용정보원	www.hrd.go.kr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
		연락처	☎ 1577-7114

# 3-1

## 집체훈련과정 심사(통합심사)

“집체훈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심사를 통하여 NCS 기반의 산업현장성을 높이고, 지역·산업 수요에 필요한 우수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직업훈련 품질 향상에 기여”

### 관련법령 및 고시

법제처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http://www.moel.go.kr))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9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5호)

「국민내일배우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5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3호)

### 심사대상

- 통합심사의 집체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원격훈련(인터넷, 우편훈련) 및 외국어 훈련 과정은 제외
  - 사업주 훈련은 위탁훈련에 한하며, 기업 자체(자체+위탁 포함)훈련 및 채용 연계형 훈련 등은 제외

훈련대상	훈련사업	구분(약어)
실업자 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실업자)	실업자 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업자 국기
재직자 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재직자)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사업주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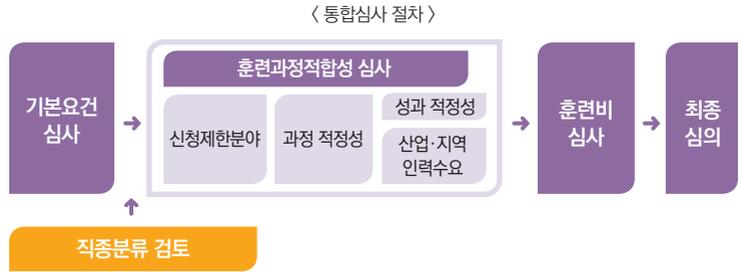
### 심사시기

-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HRD-Net를 통해 공고

구분	심사 신청공고
상반기	· 4월 ~ 5월경 “당해연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신청공고” (※ 결과 공고는 6월 말경)
하반기	· 9월 ~ 10월경 “다음연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신청공고” (※ 결과 공고는 12월 말경)

## 심사절차

① 기본요건 심사 → ②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 ③ 훈련비 심사 순



※ 단, 사업주 위탁(중소기업특화)등은 일부 다를 수 있음(세부 내용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참조)

## 특화훈련 심사

- 특정 훈련대상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통합심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심사 - 특화심사는 통합심사와 달리 역량심사 등 별도 심사절차를 포함하고 있음

구분	심사대상
실업자 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
	· 과정평가형 자격 심사
	· 청년취업아카데미 훈련과정 심사
	·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

※ 특화훈련 심사의 경우, 각 심사사업별로 대상, 시기, 절차 등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사업 공고 내용 확인 후 참여 요망



### 관련 문의

문의내용	문의처		
<b>통합심사 신청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b> · 통합심사 일정(심사기간 등)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한도 수 · 심사단계별 절차 및 방법 · 통합심사 결과 관련 - 기타 특화훈련과정심사 신청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집체훈련 심사센터	<a href="http://www.ksqa.or.kr">www.ksqa.or.kr</a>	소통마당 > 집체(통합)훈련심사 > Q&A
		연락처	☎ 1644-5113 연결 후 2번
		이메일	ccte@koreatech.ac.kr
<b>전산요류 관련</b>	한국고용 정보원	<a href="http://www.hrd.go.kr">www.hrd.go.kr</a>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
		연락처	☎ 1577-7114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문의 또는 HRD-Net 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공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및 신청방법 등 기타 정보 확인 가능

## 3-2

# 원격훈련과정 심사

“원격훈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심사를 통하여 원격훈련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하고, 새로운 훈련방법 및 첨단훈련매체 도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 기반 마련”

### 관련법령 및 고시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부 (www.moel.go.kr)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12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5호)

### 심사대상

#### ■ 재직자 원격훈련과정, 실업자 원격훈련과정

훈련대상	훈련사업	원격훈련 유형
재직자 훈련	사업주 위탁훈련/자체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원격훈련</li> <li>• 우편원격훈련</li> <li>• 스마트훈련</li> <li>• 혼합훈련(B/L)</li> </ul>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기업대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원격훈련</li> </ul>
실업자 훈련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원격훈련</li> <li>• 혼합훈련(B/L)</li> </ul>

※ 세부심사계획 등은 “2020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공고” 참고

### 심사시기

(2020년 기준)

#### ■ 정기심사 연 6회, 변경신청 수시 진행

심사차수	접수시작	접수마감 (~18:00)	심사자료 수정·보완 마감(~18:00)	결과발표
1차 (1월 1차)	1.31	2.10	2.12	3.23
2차 (3월 1차)	3.25	3.31	4.2	5.19
3차 (5월 1차)	5.21	5.27	5.29	7.10
4차 (7월 1차)	7.13	7.17	7.21	9.1
5차 (9월 1차)	9.4	9.10	9.14	10.30
6차 (10월 1차)	11.3	11.9	11.11	12.23

※ 접수 마감일 및 심사자료 수정·보완 마감일 18:00까지 심사시스템상 심사 신청을 마쳐야 함

##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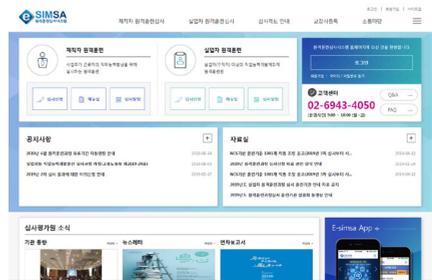
## 원격훈련심사 시스템

(www.e-simsa.or.kr)

- 훈련기관 별 교·강사 pool 관리
  - [교강사등록] 메뉴 이용
- 원격훈련과정 심사 신청 및 결과확인
  - [재직자 원격훈련심사], [실업자 원격훈련심사] 메뉴 이용
- 원격훈련과정심사 매뉴얼(자료집) 다운로드
  - [소통마당] > [자료실] >

'2020년 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공지(2020-02-28)' 게시글 확인

※ 상기 내용은 제도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문의

문의내용	구분	문의처		
과정심사 (원격훈련심사시스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	www.ksqa.or.kr	☎ 1644-5113 연결 후 3번
			www.e-simsa.or.kr	
			이메일	
과정 인정	사업주훈련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www.hrdkorea.or.kr	☎ 1644-8000
	근로자훈련 실업자훈련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www.work.go.kr/jobcenter	☎ (국번없이) 1350
	HRD-Net	한국고용정보원	www.hrd.go.kr	☎ 1577-7114
원격훈련 모니터링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emon.hrdkorea.or.kr	☎ 052-714-83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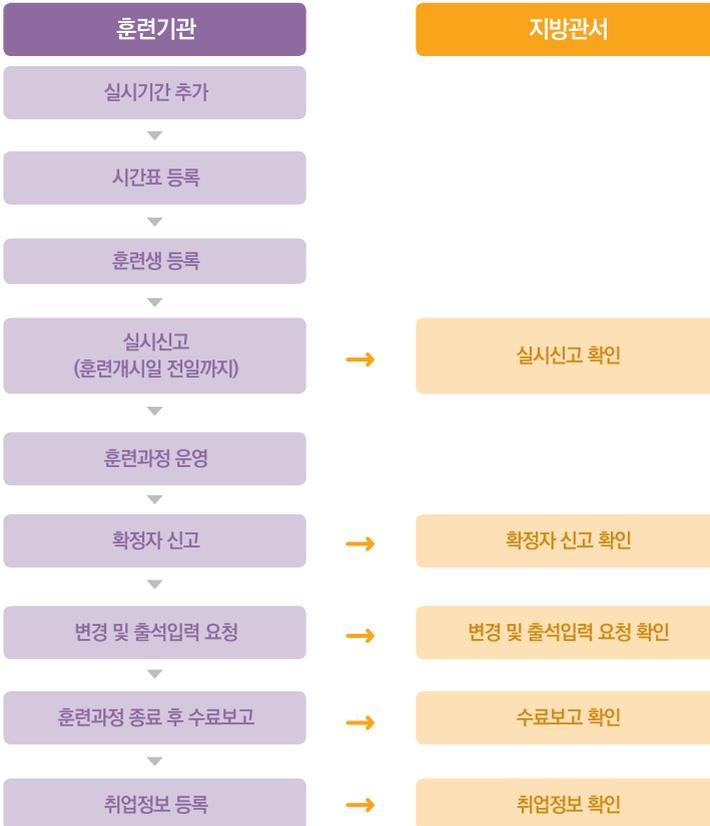
# 4-1

## 훈련과정 운영의 이해 (실업자훈련·근로자훈련)

### 관련법령

법제처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http://www.moel.go.kr))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5조~제19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5호)

### 〈실업자 및 근로자훈련 운영 개요〉



※ 훈련비 지급은 훈련기관에서 '단위기간별 비용신청' 시 지방관서에서 '비용검토 및 지급'의 순서로 진행

## 출결관리

구분	세부내용
출석 체크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생의 입·퇴실 출석 체크 여부를 HRD-Net 전산망에서 반드시 확인</li> <li>※ 훈련과정 시작 및 종료 후</li> </ul>
결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각, 조퇴, 외출 3회 시 1일 결석</li> <li>• 1일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li> </ul>
출석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li> <li>-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3]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li> </ul>
출석입력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분실/훼손, 정전, 단말기 고장 등의 사유로 훈련생이 출석체크 할 수 없는 경우</li> <li>- 해당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 요청</li> <li>- 지방관서에 출석입력요청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li> </ul>
훈련생 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일 경우 (단위기간 14일 이상인 경우 적용)</li> <li>-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를 초과하여 결석한 날의 다음 날로 제적</li> <li>-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처리한 경우(부정출결 한 날로 제적)</li> <li>- 소정 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li> </ul>

## 훈련비 지원절차

- ① 훈련과정의 훈련비 등 지급은 단위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마감하여 산정
  -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마감하여 산정
- ② 훈련기관은 HRD-Net을 통해 마감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훈련비,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비 신청(훈련기관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비 등이 지급되지 아니함)
- ③ 신청된 단위기간의 훈련비, 훈련장려금은 신청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 및 지급
- ④ 훈련비는 제휴카드사를 통해 훈련기관에게, 훈련장려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 (※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 수강평 미입력 시 훈련장려금 미지급)



### 관련 문의

문의내용	문의처		
실업자·근로자 통합훈련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고용센터( <a href="http://www.work.go.kr/jobcenter">http://www.work.go.kr/jobcenter</a> )	
		연락처	☎ (국번없이) 1350

## 4-2

# 훈련과정 운영의 이해 (사업주훈련)

### 관련법령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3호)

### 사업주 훈련 운영개요



##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 대상과정

### ■ 사업주훈련 중 위탁훈련과정(자체+위탁과정, 원격위탁과정 포함)

※ 자체훈련, 자체+위탁훈련, 채용예정자훈련, 계약학과는 제외

## 위탁훈련 비용 신청 절차

업무단계	주체	수행업무	비고
훈련신청 ↓	사업주	· 해당과정 훈련신청	훈련기관, 사업주의 여건에 따라 1형, 2형중 선택하여 과정운영
	훈련기관	· 신청기업별 규모, 지원한도, 고용보험체납여부 및 훈련생 정보 등 확인 * 신청기업의 정부지원금 계산	
훈련기관 ↓ 사업주	· 훈련 위탁계약 체결 * 총훈련비, 정부지원훈련비 구분 * 정부지원훈련비 지급방법 및 시기 * 참여사업장의 규모, 지원율 등 명시 <b>&lt;1형 : 지원금 후수납용&gt;</b> * 훈련기관은 사업주 자기부담훈련비만 선수납 후 정부지원금은 사후 환급 <b>&lt;2형 : 지원금 선수납용&gt;</b> * 훈련기관은 총훈련비를 선수납 후 정부지원금은 사후 사업주에 환급		
훈련실시 ↓	훈련기관 ↓ 공단	· 훈련생 등록	
훈련비 수납 ↓	훈련기관 ↓ 사업주	· 1형: 사업주 자기부담훈련비 수납 · 2형: 사업주로부터 총훈련비 수납 * 자기부담훈련비=총훈련비-정부지원금	
수료자 확정 ↓	훈련기관 ↓ 공단	· 훈련수료보고 후 최종 수료자명단 확정 * 정부지원금 계산 · 지원한도, 고용보험체납여부 확인 * 1형 위탁체결의 경우, 지원인원한도 초과시 사업주 자부담훈련비 추가 수납 (*참여기업의 고용보험 체납시 지원불가)	
훈련비용 신청	훈련기관 ↓ 공단	· 정부지원금 신청 및 환급 * 2형 위탁계약 체결시 정부지원금 환급후 위탁계약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 관련 문의

문의내용	문의처	
사업주훈련 운영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지원팀	www.hrdkorea.or.kr
		연락처 ☎ 1644-8100

# 5

## 훈련이수자 평가

“직업훈련 평가체계 구축과 훈련생 학습성취도 제고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 개발 및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점검”

관련법령  
및  
고시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

### 평가대상

- 훈련종료일이 '20. 1. 1. ~ '20. 12. 31. 인 40시간 이상 NCS 및 비NCS 과정 중, 훈련 기관이 NCS 소분류 직종별 1개 과정(훈련과정 코드 기준)을 대표로 선정하여 평가 신청
  - 직종별(NCS소분류기준) 1개 과정평가가 원칙이며, 평가결과 중 평균등급 미만(C·D등급)으로 최종 판정(평가 중이거나 이의신청 중인 과정 제외)을 받은 과정은 NCS 소분류 직종 내 타 과정(훈련과정 코드가 다른) 1개를 추가 신청\* 가능
    - \* 1~9회차 평가 신청 가능 과정만 가능하며, 결과 발표가 해당연도의 신청 시기 이후에 결정되는 10~12회차는 추가 과정 신청이 불가하고, D등급을 부여받은 과정 중 평가를 받지 않은 행정처분, 평가포기 등도 추가 신청 불가
  - **주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와 '훈련과정 심사'에서 '훈련이수자 평가' 점수를 부여받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훈련이수자 평가를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업 공고 참조

#### '20년도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이수자 평가

- ① '20년도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외부평가(정기, 수시) 종료 후 자격 취득률에 따라 평가등급 부여 예정
- ② '21년도 상반기(1차 외부평가 종료 후) 공고 예정인 「20년도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이수자 평가 신청안내」에 따라 평가 신청한 과정에 한하여 별도 이수자 평가등급이 부여되며, 등급 기준 등 세부사항은 신청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 평가유형

- 평가대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인원을 고려하여 '현장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현장평가** 샘플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5명 훈련생 필요, 현행과 동일하게 현장평가로 진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A~D)부여
    - \* 인정되는 출석을 제외하고 샘플평가 5명이 미달되거나,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감점이 부여됨을 주의하여 신청
  - **서면평가** 훈련생이 2명 이하인 경우 권장, 평가신청자료를 통해 평가체계구축에 대한 최소요건만 검토하고 적합 시 평가결과 D등급 부여, 부적합 시 평가 취소처리

## 평가절차

### ■ 현장평가



### ■ 서면평가



## 평가지표

### ■ 현장평가

평가영역(배점)	평가항목(배점)
1. 평가계획(10점)	① 평가계획이 훈련목표 및 수준에 맞게 구성되었는가?(10점)
2. 평가실행(30점)	① 사전평가를 적절히 실시하였는가?(11점)
	② 본 평가도구는 훈련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적절한가?(13점)
	③ 평가계획에 따라 적절히 훈련생 평가를 실시하였는가?(4점)
	④ 훈련생에게 적절한 평가 안내가 이루어졌는가?(2점)
3. 평가결과 관리(10점)	① 평가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가?(8점)
	② 능력단위(교과)별 이수 결과를 관리하고 있는가?(2점)
4. 샘플평가(50점)	① 훈련생은 훈련을 통해 능력 획득을 하였는가?(50점)
5. 가점(3점)	①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교·강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3점)
6. 감점(5점)	① 현장평가 당일 평가참여도(출석률)가 높은가?(5점)

### ■ 서면평가

- 평가 신청 자료의 최소요건\*을 검토하여 평가 실시

\* 자체평가보고서, 별첨1.평가도구, 별첨2.훈련시간표 첨부 여부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내용

## 평가결과 발표 및 활용

- 현장평가
  - 평가점수에 따라 4개 등급(A, B, C, D)\*으로 부여
  - \*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 90점 미만, C: 70점 이상 ~ 80점 미만, D: 70점 미만
- 서면평가
  - 최소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적합 시 D등급 일괄 부여
- 발표시기
  - 평가를 실시한 다음 달 말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결과 발표
- 결과활용
  -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 선정에 반영

## 평가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유형\*(현장 또는 서면)을 선택하여 신청
  - \* 평가 신청 마감일 전까지는 신청유형 변경이 가능하지만,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유형 변경이 불가함에 주의
- 신청일정

구분	훈련종료일 범위	평가 신청 시기	현장평가 기간	결과발표
1차	2020.1.1. ~ 2.29.	2019.12.16. ~ 12.23.	1월	2월
2차	2.1. ~ 3.31.	2020.1.2. ~ 1.9.	2월	3월
3차	3.1. ~ 4.30.	2.3. ~ 2.10.	3월	4월
4차	4.1. ~ 5.31.	3.2. ~ 3.9.	4월	5월
5차	5.1. ~ 6.30.	4.1. ~ 4.8.	5월	6월
6차	6.1. ~ 7.31.	5.1. ~ 5.11.	6월	7월
7차	7.1. ~ 8.31.	6.1. ~ 6.8.	7월	8월
8차	8.1. ~ 9.30.	7.1. ~ 7.8.	8월	9월
9차	9.1. ~ 10.31.	8.3. ~ 8.10.	9월	10월
10차	10.1. ~ 11.30.	9.1. ~ 9.8.	10월	11월
11차	11.1. ~ 12.31.	10.5. ~ 10.13.	11월	12월
12차	12.1. ~ 12.31.*	11.2. ~ 11.9.	12월	21년 1월

\* 상기 일정은 2020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2차는 해당년도 종료에 맞춰 훈련종료일 범위가 1개월임에 유의



### 관련 문의

문의내용	문의처		
훈련이수자 평가 관련	훈련성과평가센터	www.ksqa.or.kr	소통마당 > 훈련성과평가 > Q&A
		연락처	☎ 1644-5113 연결 후 4번
전산오류 관련	한국고용정보원	www.hrd.go.kr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
		연락처	☎ 1577-7114

# 6

## 부정훈련관리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과정을 운영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적법·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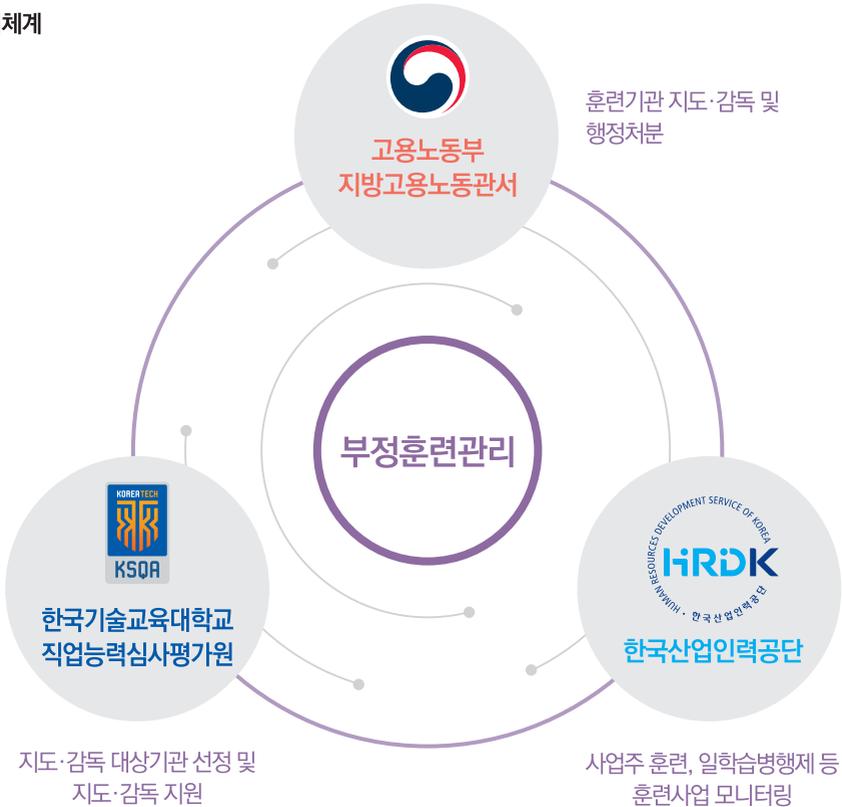
관련법령  
및  
고시

법제처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http://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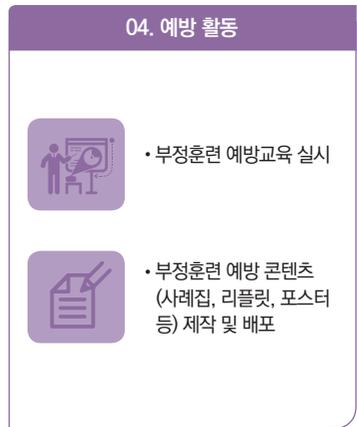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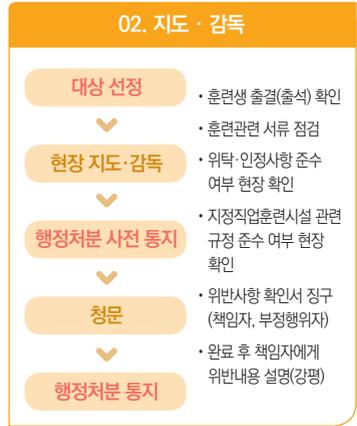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58조(지도·감독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5호)

### 부정훈련관리 협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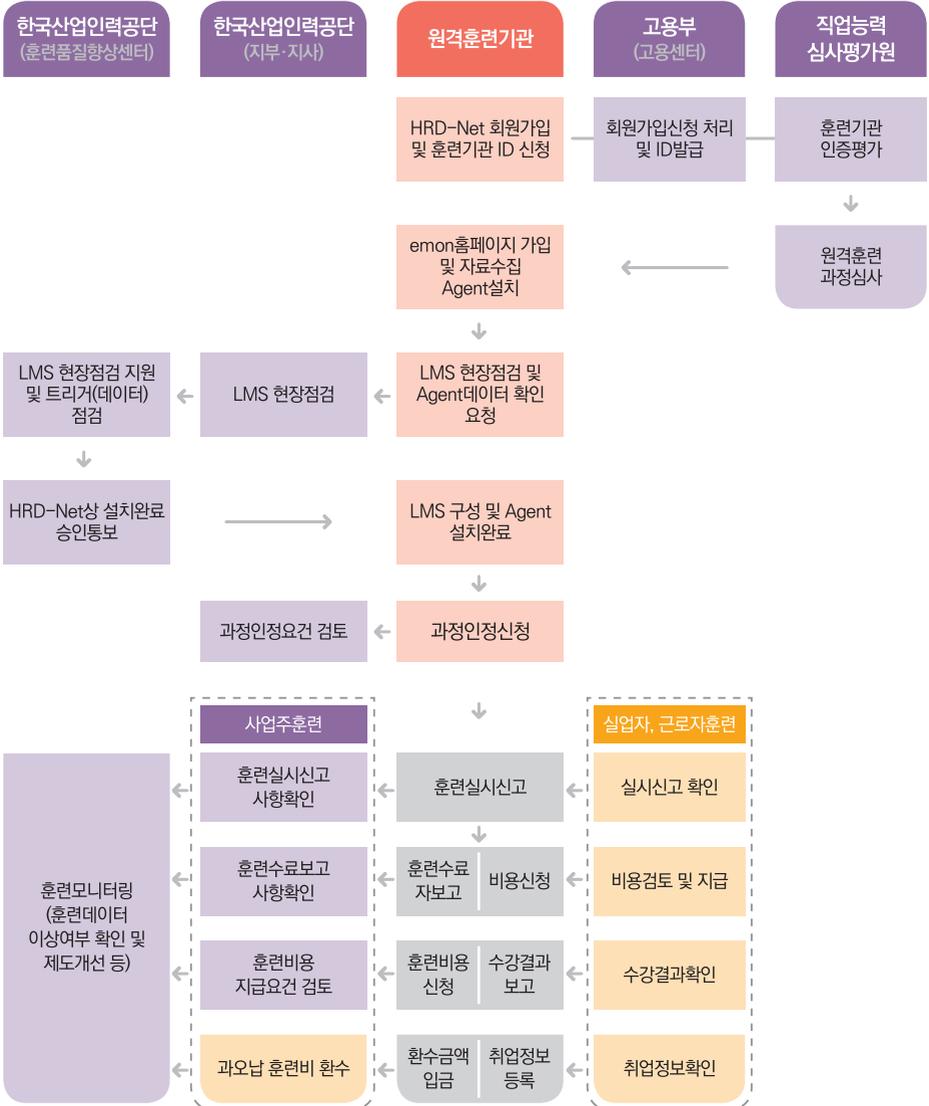
## 부정훈련관리 절차



## 관련 문의

문의내용	문의처			
부정훈련 관련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a href="http://www.work.go.kr/jobcenter">http://www.work.go.kr/jobcenter</a>		
	부정훈련관리센터	연락처	☎ (국번없이) 1350	
		<a href="http://www.ksqa.or.kr">www.ksqa.or.kr</a>		소통마당 > 부정훈련관리 > Q&A
		연락처	☎ 1644-5113 연결 후 5분	
		이메일	<a href="mailto:cita@koreatech.ac.kr">cita@koreatech.ac.kr</a>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a href="http://www.hrdkorea.or.kr">www.hrdkorea.or.kr</a>		
연락처		☎ 052-714-8342		

# check! 원격훈련기관의 훈련운영 프로세스 이해하기



# 심사평가사업 관련 기본용어 모음

## 관련 법 및 규정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정책, 제도, 각종 심사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실업자와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모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내일배움카드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 업무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 관한 평가 및 인증, 훈련과정 적정성 심사 및 성과평가, 부정훈련 방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 훈련 유형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기직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고용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훈련

###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훈련

「고용보험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및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들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장비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훈련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9조 및 「고용보험법」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제27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제29조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훈련 유형

### ■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 스마트훈련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LMS)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 인터넷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LMS)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

### ■ 우편원격훈련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LMS)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기타(훈련사업별 주요용어, 명칭 등)

### ■ 기본요건 심사

'집체훈련 통합심사'사업 관련 용어로, 심사 신청 시 기본요건에 해당되는 훈련기관의 신청자격, 과정편성 기본요건, NCS 적용 훈련과정 필수기준의 3가지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심사

### ■ 성과적정성 심사

과정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훈련과정 중 NCS소분류별 수료인원이 5인 이상인 훈련과정에 대하여 성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

### ■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 ■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 사이트. 훈련기관 인증평가, 집체훈련 심사 등 각종 심사와 평가와 관련된 신청 및 접수, 결과 관리 등 관련된 모든 절차가 HRD-Net을 통해 진행

### ■ 훈련생 샘플평가

'훈련생 이수자 평가'사업 관련 용어로, 임의 선정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요구되는 능력 획득 여부를 검증하는 평가

###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는 물론 출석과 결석 등 학사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해주는 전산시스템 (유이어: 학습관리시스템 또는 학사관리 운영 플랫폼)

### ■ NCS 훈련기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 훈련 목표, 교과내용, 훈련시설·장비, 교사 등에 관한 기준

**2020** 한 눈에 알아보는

##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운영

---

**발행연월일** 2020년 10월 19일 인쇄

2020년 10월 19일 발행

**발행인** 이문수

**발행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12층  
홈페이지: <http://www.ksqa.or.kr>  
대표전화: (02) 1644-5113 / 팩스: (02)6943-4025  
인쇄처: 경성문화사



**2020**

**한 눈에 알아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매탁로타워 12층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종합민원센터  
Tel 1644-5113 Email [ksqa@koreatech.ac.kr](mailto:ksqa@koreatech.ac.kr) Homepage [www.ksqa.or.kr](http://www.ksqa.or.kr)